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정관

2008년 5월 30일 제정

2016년 12월 10일 개정

2019년 05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경남지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며, 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자료집, 번역서, 연구 및 활동성과물 등 간행
3. 문화예술경영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세미나, 워크숍, 교육 활동 전개
4. 문화예술경영 및 관련 분야의 자료 수집과 제공
5. 문화예술경영 및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6. 문화예술 관련 국내 기관, 기구, 단체에 대한 자문 및 연구, 평가 실행
7. 문화예술경영 및 문화정책 관련 제반 사업 기획과 실행
8. 공연예술, 전시회, 축제 등 문화예술 기획사업 실행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정회원: 문화예술경영학 및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학 혹은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과 관련된 과목

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

- 2) 문화예술경영학 또는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기구,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종사자
- 4) 국공립,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문화예술경영학 및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5) 기타 분과학문 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예술경영학의 연계성을 연구하는 자
- 6)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 1) 문화예술경영학 혹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2) 본 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3. 기관회원:

-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출판사, 문화예술업체 등의 기관이나 단체
- 2)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4.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금 혹은 이에 상당한 물품을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명의로 발간되는 학회지를 배포 받을 수 있다. 다만, 준회원 및 기관회원의 대표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2인 이상
3. 감사 1인
4. 집행임원 3인~50인(부회장, 자문위원 포함)
5. 이사는 회장과 고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집행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가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와 관련한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0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정회원의 최소 4분의 10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및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이사회 및 부속기관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1) 집행임원회의는 회장, 및 집행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적인 집행에 있어서 심의, 의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을 담당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분과위원회는 본 학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과 회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비
2. 회비
3. 특별회비
4. 이사회비
5. 참가비
6. 논문 게재비
7. 연구 및 교육 용역비
8. 기부금과 후원금
9. 기타 4조에 열거된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기부금 사용)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3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총무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05월 23일